

##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되, 동 조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”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공제상품계약을 말한다.

제85조의2(행정처분의 시효) ① 제8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8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)부터 5년(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시효”라 한다)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
② 조치 대상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, 검사·조사, 검찰·경찰 등의 수사, 행정심판,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. 다만,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시효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

만인 경우에는 시효는 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

④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「보험업법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- <u>다만,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하되, 동 조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”이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공제상품 계약을 말한다.</u></p> <p>제85조의2(행정처분의 시효) ① <u>제8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8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)부터 5년(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시효”라 한다)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② <u>조치 대상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, 검사·조사, 검찰·경찰 등의 수사, 행정심판, 소송</u></p>
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. 다만, 소송 이외의 사유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시효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효는 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

④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조치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지에 따라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.